2021년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사업 공고
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1년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> 2021년 2월 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

2021년 상반기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사업 공고

1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』이란?

-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』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,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-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』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- 아 사업의 부제인 '창작디딤돌'은 '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되는 사업'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

2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o (신청 기간) 2021년 상반기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 신청기간

공고	온라인 신청		우편 신청	현장 신청 대행		선정 인원
8-2	시작	마감	소인분 유효 기간	시작	마감	60 66
2월 19일(금)	3월 2일(화)	3월 15일(월)	3월 2일(화) [~] 3월 5일(금)	3월 8일(월)	3월 12일(금)	6,000명
	10:00	17:00		10:00	17:00	

- * (온라인 신청)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, 마감일 17: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. 신청서의 '신청 완료' 여부 확인 필수
- * (현장신청대행)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신청 대행 기간 내에만 온라인 신청을 대행하며, 현장 신청 대행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사항 참조
- o (결과 발표) 2021년 5월 넷째 주(예정)

□ 신청방법

-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(www.kawf.kr)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,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
-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현장 방문을 통해
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
- o (온라인) 창작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의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·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
- (우편) <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> 반드시 동봉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·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(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)
 - 주소: (03088)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-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
 - *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, 온라인·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, 중복 신청에 유의
 - * 발송 주소를 잘 못 기재 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,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 및 수신처를 명확히 기재
- (현장) 증빙 서류를 반드시 발급·출력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(신청기간 준수)
 -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함
 - 주소: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-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 지원팀

□ 제출서류

- o 각 서류의 발급·구비처 및 양식·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
- (공통필수) 신청 방법·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
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
 - *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
 - 혼인관계증명서 1부
 - *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신청자가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
 - 통장 사본 1부
- (해당제출)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
 - 우편 신청 시: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
 - *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
 - 원로 예술인 우편 신청 시: 수강계획서 1부
 - *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
 - 농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: 주민등록등본 1부
 - *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
 - 코로나19 피해 예술인: 사실확인서 1부
 - *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

참여 자격

□ 참여 대상

- o 아래 각 호가 **모두 해당**되는 예술인
 - (예술활동증명) 「예술인복지법」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)
 - * (유효기간) 예술활동증명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
 - (소득인정액)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*의 소득인정액*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*인 예술인
 - * (소득인정액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
 - * (가구원 범위)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
 - * (기준 중위소득 120%) 1인 가구 2,193,397원, 2인 가구 3,705,695원 이내
 - (고용보험)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 예술인

□ 참여 제한 대상

- o 아래 각 호 중 **하나가 해당**되는 예술인
 - (예술활동증명)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
 - *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의 재신청(갱신) 심의 중에는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, 재신청 완료 후 사업 신청 가능
 - * 「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」, 「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」 및 「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」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
 - **(연령제한)** 만 19세 미만 예술인
 - (고용보험)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
 - (중복참여)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

중복 참여 제한 사항

-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
 -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예술인
 - 예시: '21년 상반기 사업 선정 예술인은 '21년 하반기 및 '22년 상 하반기 사업 참여가 제한됨
-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
-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
 - * 활동 보고서 미승인 등
-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**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**하는 예술인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
금액(원/월)	2,193,397	3,705,695

- (가구원범위)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
- (소득인정액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,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 소득 120%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
-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

□ 유의사항

-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**〈시행지침〉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**
- (역량강화) 당해 연도 우리 재단 『예술인 파견 지원사업-예술로(路)』과
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(선택 불가)
- (사회보장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

- (고용보험)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에 구직급여 수급 불가
 - 확약서 작성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심의 제외
 - 창작준비금 수혜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 내 사업 참여 제한
- (중복수혜) 정부지원금·지방자치단체·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·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하며,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
 - * (예시) 고용노동부 「청년구직활동지원금」은 해당 부처에서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, 해당 사업 참여 중인 자는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함에 유의
 - * 명시된 기관·사업 외에도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·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시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, 중복 신청 (또는 선정)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

4 심의 및 결과 안내

□ 심의

○ (심의방법) 제출 서류 및 신청서 작성 사항에 근거,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부문별 배점 합산,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·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

○ (배점기준)

- 소득 부문 배점표

부문	항목	배점	산정방법	
소득	기준 중위소득 0 [~] 30%	9		
	기준 중위소득 31 [~] 60%	8	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	
	기준 중위소득 61 [~] 90%	7	사회포장장포시트림 전계 	
	기준 중위소득 91 [~] 120%	6		

- 추가 부문 배점표

부문	항목	배점	산정방법		
추가	최초 수혜 예술인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기				
	농·어촌 지역 예술인	최대 1점	주민등록등본 반영		
(택 1)	코로나19 피해 예술인		사실확인서 반영		
	1) '15년 ~ '21년까지 우리 재단에	서 시행하는	창작준비금지원사업(원로 포함)에		
	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,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) 모든 정보를 미포함 발급하여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기				
세부	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5호의 가항과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·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				
사항					
	3)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	명 시행령에 따	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		
	격리,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	실이 있거나	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		
	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(재단 양식)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				
유의	$$ • 1 $^{\sim}$ 3의 항목 중 여러 항목에 해당:	되더라도 중복 ㅂ	배점 불가(추가 배점 최대 점수 1점)		
	• 1의 항목을 제외하고 2, 3 항목은 사업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				
사항	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	완 또는 추가	제출 등은 불가		

(우선선정)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, 자격 충족시 우선 선정됨

구분	기준	확인방법
원로 예술인	만 70세 이상인 자	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
장애 예술인	장애인으로 등록된 자*	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

* (장애 예술인) 장애의 종류 및 정도는 무관

□ 결과 발표

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 (SMS/LMS),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,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

□ 의무사항

- (활동보고)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<결과보고서> 또는 <계획보고서>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함
 -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며, 기간 및 서식은 메일·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
 - 보고서 미승인*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 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
 - * 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
- (모니터링)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, 모니터링,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

6

- o (유선)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)3668-0200
- o (인터넷)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 1:1 문의
 - * 대전, 광주, 부산, 전라북도 등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.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*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휴관 중인 기관이 많으니 방문 전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 - 광주문화재단: 062-670-5722 ~ 5723, www.gjcf.or.kr
 -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: 예술진흥팀 051-745-7234, www.bscf.or.kr
 -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: 문화사업팀 063-230-7449 www.jbct.or.kr
 -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: 055-230-8730

2021년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주요 문의사항

□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.

- o 소득, 재산 반영 항목 및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- o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시스템의 '소득인정액 모 의계산'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단,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값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의하여 조사, 산정될 소득·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 랍니다.

□ 원로 예술인입니다. 어떤 사업에 신청하나요?

- o 2019년까지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습니다.
- 예술인 신청 편의성 증대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, 2020년부터 『창작준비금 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로 통합 운영합니다.
- 원로 예술인(만 70세 이상)은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'원로 예술인'으로

분류되어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예술분야 교육동영상을 수강하게 되며, 우편 신청 시에는 수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□ 장애 예술인입니다.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o 2019년까지 장애인증명서를 별도 제출한 장애 예술인에 한하여 배점 1점이 부여되었습니다.
- 2020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, 별도의 서류를 구비·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. 이때,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.

□ 미혼입니다.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이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. 해당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이므로,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심의에 반영합니다.

□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- o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·간접적으로 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2020년에 이어 특별 가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
 예술인에게는 심의 후 특별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.